

한국체육대학교객원교수규정

제정 2009. 6.18. 규칙 제509호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한국체육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의 객원교수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객원교수라 함은 연구분야, 공공분야 및 민간산업체분야 등의 해당 기관에서 오랜 실무경험과 학문적 업적을 갖춘 국내·외 권위자로서 본교 해당 분야의 교육 및 연구 등을 담당하도록 임용된 자를 말한다.

제3조(자격) 객원교수는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
1. 외국의 공인된 대학교 또는 연구기관에 소속된 학자로서 한국에 체재하는 동안 본교에서 교육 또는 연구에 종사할 자
2. 국내의 타교 또는 연구기관에 종사하였던 사람으로 그 업적이 탁월하여 본교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
3. 국·내외 공공기관 또는 기업체의 임원으로 본교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
4. 기타 위 각호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자

제4조(추천절차) ①객원교수를 활용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객원교수 임용을 총장에게 추천하고, 총장은 추천된 자에 대하여 객원교수 적격 여부를 심의한 후 본직기관장의 동의를 얻어 임용한다.

②객원교수를 임용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매학기 개시 1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.

1. 객원교수 임용추천서(별지 제1호 서식)
2. 이력서(별지 제2호 서식)
3. 직무계획서(별지 제3호 서식)
4. 본직기관장 동의서(별지 제4호 서식 : 해당자만)
5. 학력증명서 및 경력증명서

③추천된 객원교수는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용한다.

제5조(임용기간) ①객원교수의 임용기간은 학기 또는 학년 단위로 하되, 통산 재직기간은 3년으로 한다.

②임용기간의 연장절차는 제4조 2항 및 3항을 따른다.(단, 학·경력증명서 제출은 면제)

제6조(면직) 객원교수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소속 부서장의 제청에 의하여 면직할 수 있다.

1. 직무계획서에 명시된 교육 및 연구 등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때.
2. 본교의 객원교수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
3. 기타 면직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

제7조(직무) ①객원교수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대학(원) 강의, 논문지도, 연구 및 실험실습지도
2. 특별 강의 및 세미나
3. 기타 교육 및 연구에 관한 자문

제8조(처우) ①객원교수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강의, 논문지도, 연구 및 실험실습지도 등에 대한 수당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.

②객원교수는 대학의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다.

③객원교수에게는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.

제9조(세부사항)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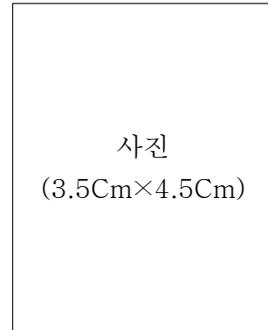
부 칙 (2009. 6.18. 제509호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2호서식)

이 력 서

1. 이 름 :
2. 생년월일 :
3. 주소 및 전화번호
가. 자택 :
나. 직장 :
4. 학 력(대학 이상)
5. 경 력
6. 연구실적
7. 기타



위에 기록한 사항들은 틀림이 없습니다.

년 월 일

작성자

(인)

한국체육대학교총장 귀하

[별지 제4호 서식]

객원교수 임용 동의서

1. 대 상 자

소 속 :

직 위 (급) :

성 명 :

주민등록번호 :

2. 임용기간 :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

3. 임용직급 : 객원교수

4. 임용부서 :

5. 담당직무

가. 대학(원)생 강의, 논문지도, 연구 및 실험실습지도

나. 특별강의 및 세미나

다. 기타교육 및 연구에 관한 자문

위 사람을 귀교에서 객원교수로 임용하는데 동의합니다.

20 년 월 일

본직기관장 :

직인

한국체육대학교총장 귀하